

정보윤리 운영세칙

제정 2001. 6. 1

개정 2025. 7. 1

제 1 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건전한 정보 이용 문화가 대학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보 이용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건전 정보에 대한 심의 기준을 제 공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

제 2 조(이용자의 권한) 포항공대의 구성원이 되면 대학의 전산자원 이용과 정보윤 리에 관한 운영세칙을 지킬 것을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전산자원 및 정보이용 권 한이 부여된다.

제 3 조(이용자의 책임) 대학의 전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이용 자가 제 5조의 불건전 정보 심의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의 제재를 받는다.

제 4 조(적용범위) 대학 내에서 전산자원을 이용하는 전자적시스템(전자메일 또는 유사기 능을 가진 시스템,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전달되는 모든 정보에 적 용된다.

제 5 조(불건전 정보 심의 기준) 아래의 각 사항에 저촉되는 경우는 불건전 정보로 간주 한다.

1. 대학의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내용
2. 개인 또는 부서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4.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 공개금지가 되어 있는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
6.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
7. 개인비방, 유언비어, 협박, 사기, 음란 등의 내용
8.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 보드의 개설 취지와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내 용
9. 기타 학술정보운영위원회에서 불건전 정보로 결정한 경우(개정: 2025. 7. 1.)

제 6 조(제재 절차) ① 불건전 정보심의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학술정보운영위원회 에서 심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산자원 이용에 관한 운영세칙 제6조의 제재절 차를 따른다.(개정: 2025. 7. 1.)

② 학술정보처에서는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의 삭제 등 선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경우 소관 부서의 위원에서 먼저 제재범위를 심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학술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

부 칙

1. (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01년 6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